

(國)(外)(事)(件)

特許出 公告決定後의 分割出願效力

<日本最高裁 1980年 1月 18日 判決, 1978年(行ツ)101號>

1. 上告人:X(被告)

2. 被上告人:Y(原告)

3. 事件概要

Y는半사이즈映畫필름의撮影및
映寫方法에 대한發明을 出願公告
決定後에 半사이즈필름錄音裝置의
발명을分割出願하였던 바 特許廳은
舊特許法은 公告決定後에는 同法75
條5項의命令에 의한 경우를 除外
하고는 明細書, 圖面을 訂正할 수가
없으므로 本件分割出願은 原出願의
發明請求範圍에 包含되어 있지 않으
며 원출원의 발명을 實質的으로 變
更할 수 있다는 것을 根據로 하여
分割出願의 要件을 充足시키지 못
한다고 審決하였다.

이에 대하여 東京高法은 舊法9條
1項을 例示, 그 발명이 원출원의
特許請求範圍에 記載되어 있는 것
에 限定하는 規定은 없으며 또 公
告決定前後에 取扱을 달리해야 한다
는 규정도 없다. 그렇다면 분할출
원은 원출원의 特許請求範圍에 기
재되어 있는 발명에 대해서만 許容
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의 詳細한 說
明, 圖面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에
대해서도 허용된다고 判示하였다.

이에 따라 X인 特許廳은 不服上
告한 것이다.

4. 判決要旨

舊特許法9條1項은 特許出願인이
2以上의 발명을 包含한다는前提下에
의 출원에 대해 그一部를 分할하여
1 또는 2이상의 새로운 출원으
로 할 수가 있으나 이 2이상의 발명
은 오로지 願書에添附된 明細書中

의 특허청구범위속의 기재에 한정
하여決定하느냐 또는 그以外의
발명의 상세한 설명 내지 願書添附
圖面의記載內容도 포함하여 결정
하느냐에 대해서는 이 法文上明白
하지가 않다.

그리나 特許制度의趣旨가 產業
政策上見地에서自己工業上의 발명
을 特許出願의 方法으로公開함으로써
社會에 工業技術豐富化에 寄
與한 發明者에게公開의代價으로
서 第3者와 사이의 利害가 適正히
調和되면서 발명을一定期間 獨占
의, 排他的으로 實施하는 權利를
賦與保護하고 있다.

또 分割出願制度를 設定한趣旨
가 特許法上 1發明1出願主義下에서
1출원에 의해 2이상의 발명에 대해
특허출원한 出願人에게 이 출원을
분할한다는 방면에 따라 출원한 것
으로 看做하여 특허를 받게하는 길
을 열은 점에 있다는 것으로 미루어
다른 別異의 解釋을 할 수 없게
하는 特段의 규정도 볼 수 없다는
것을考慮할 때는 원출원에서 분할

하여 새로운 출원으로 할 수 있는 발
명은 원출원의 원서에 첨부한 명세
서의 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것에
局限되지 않으며 그 要旨로 하는 技
術的 事項의 모두가 그 발명에 속하
는 技術分野에서의 通常의 技術的
knowledge이 있는 자가 이를 正確히 理解
하고 또 容易하게 實施할 수 있을
정도로 기재되어 있었다면 이 명세
서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 또는 이
원서에 첨부한 도면에 기재되어 있

는 것이라 할지라도 無妨하다.

舊法下에서의 분할출원이 허용되는
時期에 대하여 考察컨대 同法에
는 終期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을
설정하지 않았다. 그러나 前記와
같이 第3者에 대하여 不當하게 不
測의 損害를 끼칠 念慮가 없을 바에
야 될 수 있는데로 이들 발명에 대해
特許權을 取得하는 機會를 賦與하
려는 것이 特許制度 및 分割出願制度
에 一貫하는 제도의 취지이므로 이
취지에 비추어 볼 때는 法律上 特許
出願에 대해 出願公告의 결정이 있
기 전이나 혹은 원서에 첨부한 명세
서 또는 도면에 대해 補正할 수 있
을 때 또는 期間內 등에 局限하여 분
할출원을 할 수 있다는 特段의 규정
이 있으면 모르거나와 전기와 같이
이것이 없는 舊特許法下에서는 분
할출원은 원출원에 대하여 查定 또는
審決이確定될 때까지 이를 할 수
가 있다고 解釋함이妥當하며 이같
이 해석해도 제3자에게 不當하고
不測의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
는 생각되지 않는다.

또 이같이 해석함이 파리協約4條
G項의 취지에 合致한다. 더욱이 舊
特許法施行規則11條4項도 前記分割
出願制度의 취지로 보아 公告決定後
의 분할은 이 한가지 일로서 不適
法하다고 할 수는 없다. 따라서 原
審判斷은 正當하며 原判決에 行論
의違法이 없다.

5. 解説

本判決에서 취한立場은 正當하
다는 것이 衆論이다.